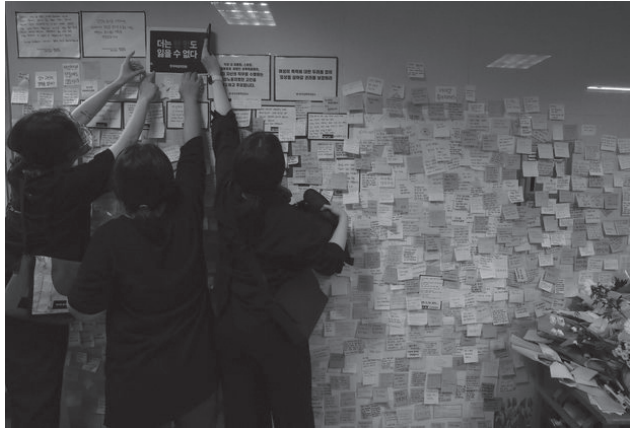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신당역 사건 후 한동훈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 효과 있을까?



<지난 9월 17일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동료였던 30대 남성 전모(31)씨로부터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고소했고, 지난해 10월 법원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취

했지만, 국가는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스토킹 범죄, 이번에는 피해를 막을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 스토킹 범죄는 왜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걸까요?

스토킹은 살인의 전조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자는 자신이 착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사랑을 방해하는 피해자 가족 역시 악한 존재가 되고, 제1순위가 됩니다.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소유하기 위해 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없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토킹범과 피해자를 초기에 완전히 분리하지 않으면 최악의 참혹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발표한 스토킹 방지 대책, 어떻게 보시나요?

법무부가 제시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스토킹 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와 가해자 위치추적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초기부터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2차 가해를 일으키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보복을 일삼아 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합의를 강요하다 피해자를 보복 살해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는 필요해 보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에 가해자 위치추적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더 반갑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는 시간보다 국가 공권력이 피해자를 보호하러 가는 시간이 빠를 때 피해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가해자의 위치를 미리 알았다면, 피해자가 홀로 순찰을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저녁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방문했다. 한 장관은 “국가가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 더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요?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이 아쉽습니다. 해당 구속영장 혐의는 비동의 촬영죄와 불법촬영물 협박죄였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 협박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매우 중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구속영장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1년 6개월 정도 구속 상태가 이어집니다. 무죄가 나올지도 모르는 ‘피의자’의 자유가 그동안 박탈되는 것이죠. 법원에서 구속 영장을 쉽게 발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구속영장 발부 눈높이를 확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속은 쉽게 하되, 그 후 보증금 납입 혹은 전자감독장치(전자팔찌)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적극적으로 인정

하면 됩니다. 구속이라는 입구는 쉽게 하되 사후 출구 방안을 활용해 방어권을 보장하면 어떨까요? 구속만이 가장 확실하게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 이번 사건, 법원과 검찰의 조치가 아쉬우시다고요?

네. 먼저 법원의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구속은 전적으로 해당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이번 사건은 불법촬영 협박 혐의를 재판하던 법원에서 스토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이후에도 스토킹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면 2차 가해를 예견할 수 있었던 대목이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법정 구속했다면 어땠을지요.

다음으로 검찰의 조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형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피해자와의 합의에 목숨을 걸 것이라는 점은 누가 봐도 명확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대검찰청이 만든 예규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피해자를 판결 선고일까지 보호시설에 거주 혹은 피해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요청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또 다른 스토킹은 어디선가 피해자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높은 가치와 이념은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속의 문턱을 과감히 낮추고, 재범의 위험성 있는 피고인에 대해 주저 없이 법정 구속이 이뤄지며 검찰은 선고일까지 피해자보호를 위한 최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 생명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안인 가해자 위치 추적이 잠정조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안이 제출된다면 국회에서 즉시 통과시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연구위원〉

(출처/조선일보)